

#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HB저축은행 앞

20 년 월 일

채 무 자 : \_\_\_\_\_ (인)  
주 소 : \_\_\_\_\_

채무자는 HB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① 이 약정서는 1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sup>주1)</sup>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또는 그 배우자)가 기존주택 보유 사유가 인정되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하 ‘신규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대출거래에 대한 추가 약정입니다.

② 제1항의 추가 약정에 의해 채무자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이 기존 보유 주택과 신규주택에 각각 주민등록 유지(이하 ‘거주’, 신규주택에 3개월 이내 전입 포함) 및 이를 입증하는 조건으로 기존 보유 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2조 (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건의 주택과 신규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 보유 주택

주택종류	소유자 (차주와의 관계)	주소
		거주자 :

㉔ 신규주택

주택종류 전입예정일	소유자 (차주와의 관계)	주소
		전입(예정)자 :

- ㉕ 채무자는 **전입(예정)시기** 및 **저축은행이 정한 주기에** 따라 제2항에 명시된 신규 주택에 채무자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의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나,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제2조 제1항 기존 보유 주택 및 제2조 제2항 **신규주택에 각각 거주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채무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

제4조 (거주 대상 주택 거주 의무 등)

- ㉑ 채무자는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2조 제1항의 기존 보유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 ㉒ 채무자는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2조 제2항의 신규주택에 대출 실행일 기준 (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 ㉓ 채무자는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차주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인 경우, 6개월마다 신규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 주택에 당초 전입한 세대원 등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제2조 제1항 또는 제2조 제2항의 주택을 처분(명의 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 ㉔ 채무자는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인 경우, 개별 세대를 구성한 이후 기존 세대 및 개별 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⑤ 채무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거주 의무 등의 이행에 따른 증빙자료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규주택에 대한 3개월 이내 전입의무 : 3개월 이내 전입 즉시
  2. 신규 주택 미거주에 따른 처분의무 : 전출일로부터 1년 이내
  3. 기존 세대 및 개별 세대의 1주택 보유의무 :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제5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1.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4조 제1항의 거주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2항의 거주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3항의 거주의무 또는 처분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4항의 1주택 보유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3조에 명시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
6.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sup>주2)</sup>하고 있는 경우  
주2) 다만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7.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거주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위장전입으로 확인이 된 경우

제6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 사실이 제공되며,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sup>주3)</sup>의 주택 관련 대출<sup>주4)</sup>이 제한됩니다.

주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5>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1.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4조 제1항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2항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3항의 거주 의무 또는 처분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4항의 1주택 보유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위장전입으로 확인이 된 경우

# 추가약정서

##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

HB저축은행 앞

20 년 월 일

채 무 자 : \_\_\_\_\_ (인)  
주 소 : \_\_\_\_\_

채무자는 HB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1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sup>주1)</sup>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투기과 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4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2조 (처분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소유자	주소

**제3조 (구입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소유자	주소

**제4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 의무)**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제3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2년(이하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1. 제4조에 따라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완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6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sup>주2)</sup>의 주택 관련 대출<sup>주3)</sup>이 제한됩니다.

주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5>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1. 제4조에 따라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완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HB저축은행 앞

20 년 월 일

채 무 자 : \_\_\_\_\_ (인)  
주 소 : \_\_\_\_\_

채무자는 HB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제2조 (기 보유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sup>주1)</sup>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 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①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종류	소유자	주소

② 보유 중인 주택 등

종류	소유자	주소

제3조 (주택 등의 추가 구입 금지의무 등)

-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실행일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 등을 구입<sup>주2)</sup>하지 않습니다.**  
주2) 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이하 같음
- ② 채무자는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4조 (증빙자료)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자금 용도 관련 증빙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 1.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전액 상환**전까지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구입**한 경우
- 2.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sup>주3)</sup>**하고 있는 경우  
주3) 다만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 3.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

제6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sup>주4)</sup>의 주택 관련 대출<sup>주5)</sup>이 제한됩니다.

주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5>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1.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전액 상환전에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구입한 경우

# 추 가 약 정 서

##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용)

HB저축은행 앞

20 년 월 일

채 무 자 : \_\_\_\_\_ (인)  
주 소 : \_\_\_\_\_

채무자는 HB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 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총 대출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가계 차주**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초과하여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제2조 (생활안정자금 목적) 채무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할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합니다.

<b>생활안정자금 사용 목적</b>

제3조 (증빙자료) 채무자는 제2조의 **생활안정자금 용도 관련 증빙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 제2조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 추가약정서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용)

HB저축은행 앞

20 년 월 일

채 무 자 : \_\_\_\_\_ (인)  
주 소 : \_\_\_\_\_

채무자는 HB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하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sup>주1)</sup>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고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  
금 반환을 위하여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개  
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고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  
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  
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2조 (임차보증금 반환 대상 고가주택 등)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  
유하고 있는 고가주택 또는 처분대상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소유자	주소
고가주택		
처분대상 주택*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한 주택 등

제3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 2주택세대는 처분대상 주택에 대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4조 (거주 의무)

- ①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제2조에 명시된 고가주택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 채무자는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주택 등의 추가 구입 금지의무 등)

-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2조에 명시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구입<sup>주2)</sup>하지 않습니다.**  
주2) 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이하 같음
- ② 채무자는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 1.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제2조에 명시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구입한 경우**
- 2.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sup>주3)</sup>**하고 있는 경우  
주3) 다만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 3. 채무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4. 채무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장전입으로 확인이 된 경우**

제7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

간 금융기관<sup>주4)</sup>의 주택 관련 대출<sup>주5)</sup>이 제한됩니다.

주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5>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1.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전까지 제2조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구입한 경우
2. 채무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제4조에 명시된 전입 의무의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4. 채무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장전입으로 확인이 된 경우